

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08.6.20>
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(제32조제1항 관련)

품 명	단 위	수 량	비 고
도 서	권	제한없음	
화장지	개(두루마리 50m)	적당량	
노 트	권	적당량	
볼 펜	자루	3	
연 필	자루	4	
편지지	권	적당량	
편지봉투	속	적당량	
머리핀	개	적당량	
생리대	개	적당량	
브래지어	개	1	

<비고>

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장은 보호소년등의 의료처우 또는 교정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의 적당량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